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2. 12. 2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1월 19일
-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2. 12. 20 :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현지성 사무를 현실에 맞게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과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노인복지 시설의 감독 등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환경과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 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사무 등 일부 위임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위임조항을 개정법령과 같이 변경함.

【 물관리과 】

-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 명령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과의 묘지 등 장사관련업무와 노인복지시설 감독 업무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환경과의 대기환경 관련업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던 사항을 동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소음진동규제 관련업무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삭제하고, 위임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물관리과의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 명령 등의 업무를 신규로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번호 제14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명령, 조사, 검사의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와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3호(개정 제20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로서 도내에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는데도 시·군에 위임한 사유,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권한은 위임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의 개선명령을 위임하지 않는 사유,

소음·진동규제법은 1999. 2. 8일 법률 제5862호로 개정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1999. 12. 31일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현지성 사무를 현실에 맞게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사회복지과】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의 재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사무 등 일부 위임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조항을 개정법령과 같이 변경함

【물관리과】

-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함

의안전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사회복지과 소관 제4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배출시설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방지사설 설치의무 면제인정 다. 가동개시의 신고 수리 라. 개선·대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마.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입신고의 수리 바. 개선명령 사. 조업정지명령 등 아. 조업정지 명령, 허가의 취소 자. 사용중지,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동법 제10조제1호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21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9조제1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속)	2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3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동법 제25조
	4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조치명령 및 사용금지, 공사중지, 폐쇄명령	동법 제26조
	5	○ 이동소음의 규제	동법 제26조의2
	6	○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동법 제27조
	7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관리	동법 제28조
	8	○ 자동차운행의 규제	동법 제30조
	9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설치요청	동법 제31조
	10	○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 사항(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	
		가. 운행차 점검실시	동법 제37조
		나. 운행차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11	○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12	○ 보고 및 검사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13	○ 청문(단,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54조
	14	○ 연차보고서의 제출	동법 제54조의2
	15	○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6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16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동법 제4조 및 제5조
17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8조의2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속)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 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 나.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다.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6조제4항 동법 제27조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 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28조제2항, 제3항
	20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	동법 제28조의2
	21	○ 생활악취의 규제	동법 제30조
	22	○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49조제1항 제3, 4, 4의2, 4의3, 5, 8의2호
	23	○ 청문	동법 제52조제3호, 제4호, 제7호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 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25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제4항
	31	사.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물관리과 소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물관리과	5	○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자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명령	수도법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4항
	6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5조제2항제1호, 제3항제1의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사 회 복지과	1~3	<생 략>		1~3	1~3	<현행과 같음>	
	4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삭 제>	
	5	○사설묘지시설화장장,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묘지구역이 2개시군에 걸치는 묘지 제외)	동법 제8조			<삭 제>	
	6	○묘지의 구역,화장장, 납골당의 시설변경허가 및 폐지 허가	동법 제9조			<삭 제>	
	7	○묘지 등 관리인 보고 및 변경보고	동법 제10조			<삭 제>	
	8	○묘지 등 시설의 검사 및 보고 명령	동법 제14조			<삭 제>	
	9	○묘지 등 시설의 이전, 개수, 사용금지명령 및 허가취소	동법 제15조			<삭 제>	
	10	○무연고 분묘의 유골 집단안치	동법 제15조 의 2			<삭 제>	
	11	○분묘등 이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동법 제15조 의 3			<삭 제>	
	12	○묘지이외의 토지 등에 매장된 시체와 유골에 대한 개장명령과 개장허가	동법 제16조			<삭 제>	
	13	○시체운반업의 허가	동법 제17조			<삭 제>	
	1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명령, 조사, 검사	노인복지법 제42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환경과	1	○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가. <생 략> 나. <생 략> 다. <u>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u> 라. <생 략> 마. <u>허가 또는 변경허가 부합 여부 확인 및 조치명령</u> 반. <생 략>	<u>소음진동규 제법 제10조 의2제2항</u>	환경과	1	○ 소음진동배출시설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라. <u>개선·대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u> 만. <현행과 같음>	<u>소음진동규제 법 제13조제3 항</u>
	2	<생 략>	<u>동법 제13조 제3항</u>		16	<현행과 같음>	
	3	○ <u>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등</u>	<u>대기환경보 전법 제28조 의2</u>		20	○ <u>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u> <삭 제>	<u>대기환경보전 법 제28조의2</u>
	4	○ <u>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대기 또는 수질 분야 1·2종 사업장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 장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u>			1		

현행				개정안			
분야별 번호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번호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속)		가. <생략>		환경과 (속)		반. <현행과 같음>	
		나. <생략>				사. <현행과 같음>	
		다. 시설의 이전명령 등	동법 제17조			<삭제>	
		라. <생략>				아. <현행과 같음>	
		마.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전기수도의 설치 및 공급중단 요청	동법 제19조			자. 사용중지, 폐쇄명령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
	5	바. 환경관리인 변경명령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등	동법 제22조 수질환경보 전법시행규 칙 제24조제4항		24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 콘제조시설 및 일반보 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6	<생략>			3	<현행과 같음>	
	7	<생략>			6	<현행과 같음>	
	8	<생략>			7	<현행과 같음>	
	9	<생략>			8	<현행과 같음>	
	10	○ 방음시설설치 및 설치요청			9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설치요청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11	<생략>	소음진동규 제법 제31조		2	<현행과 같음>	
	12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조치명령 불이행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	동법 제26조		4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조치명령 및 사용 금지, 공사중지, 폐쇄명령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13	<생략>			5	<현행과 같음>	
14	<생략>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속)	15	<생략>		환경과 (속)	12	<현행과 같음>	
	16	○ 청문(단,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제외)	소음진동규제법 제54조		13	○ 청문(단,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소음진동규제법 제54조
	17	○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제외)	동법 제61조		15	○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18	○ 환경감시원의 임명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			<삭제>	
	19	<생략> <신설>			21	<현행과 같음>	
				18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황합유기준 초과연료의 사용승인 나.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다.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6조 제4항 동법 제27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번호				번호		
환경과 (속)		<신 설>		환경과 (속)	19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28조 제2항, 제3항
	20	○ 보고 및 검사 등 (단, 지방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22	○ 보고 및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제3, 4, 4의2, 4의3, 5, 8의2호
	21	<생 략>			17	<현행과 같음>	
	22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동법 제28조의2			<삭 제>	※ 제20호와 중복
	23	<생 략>			11	<현행과 같음>	
	24	<생 략>	소음진동규제법 제54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14	<현행과 같음>	소음진동규제법 제54조의2
	25	○ 청문 (단, 지방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37조		23	○ 청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제3호, 제4호, 제7호
		<신 설>			25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 제4항
	26~30	<생 략>			26~30	<현행과 같음>	
	31	○ <생 략> 가.~바.<생 략> 사.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수리 아.~자.<생 략>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31	○ <현행과 같음> 가.~바.<현행과 같음> 사.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아.~자.<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물관리과	1~4	<생략>		물관리과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자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명령	수도법 제11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제4항
		<신설>		6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5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의2호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화장장·납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제24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제25조 (장례식장영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장례 의식을 행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고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묘지의 이전·개수,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월의 범위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 (검사 및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삭제

제13조(가동개시의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이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개선·대체·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19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22조 삭제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 안에서 자동거전용도로·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폐쇄명령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4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2.(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②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

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생략)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1. 사업자
 2. 삭제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대상인 자
 - 4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 4의3.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7. 삭제
 8. 삭제
 - 8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검사대행자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10. 삭제
 1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삭제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시정명령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삭제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1.(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배출등의 금지) ①~②(생략)

③시·도지사는 행위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 (시운전 기간 등) ④시·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4.(생략)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등은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⑦(생략)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

④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신축 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과태료) ①(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